

# 육아정책 Brief

통권 제62호 | 발행인 : 백선희 | 발행일 : 2017년 12월 10일 | 발행처 : 육아정책연구소

##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수급대책은?

### I. 유아특수교사 수급의 어려움

최근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유아특수교사 배치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.

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현안에 대한 입장은 유아특수교사 교수 입장에서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해나가야 한다는 입장까지로 다양함.

- 2007년에 제정된 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서는 만 3~5세 장애 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2012년도에 제정된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에서는 장애전문 및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였음.
  - ▶ 즉,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장애 영유아 3명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하고,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아특수교사여야 함.
  - ▶ 이러한 배치 규정은 2016년에는 만5세 이상, 2017년도에는 만4세, 2018년도에는 만3세까지로 명시하고 있어, 현재 6명 이상의 장애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는 유아특수교사가 1명 이상은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임.
- 이상의 법 규정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의 열악한 근무조건(급여,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)과 근무환경(보조 인력 및 제반 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3명의 장애영유아 담당) 등으로 유아특수교사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이러한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장애영유아 학부모단체, 현장, 관련전문가들은 국회 토론회<sup>1)</sup> 및 이정림 외(2017)<sup>2)</sup> 연구에서의 관련자 면담과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다소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임.
  - ▶ 원론적 입장: 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거하여 모든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부가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,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함.
  - ▶ 현실적 입장: 교육부 발령 유아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를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은 다소 요원한 상황이므로 어린이집 관장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으로, 유아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를 대체하자는 방안 제안함.

\*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『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 체계 개선 방안(이정림·이윤진·박현옥 2017)』에 기초함.

1)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·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(2017). 장애아 보육 강화 실현을 위한 대책을 묻다: 3~5세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. 국회 '민주주의와 복지국가위원회' 주최 토론회 자료집.

2) 이정림·이윤진·박현옥(2017).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 체계 개선 방안. 육아정책연구소.

- ▶ 절충적 입장: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, 현실적으로 유아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하자는 중도적인 입장으로, 이 기간 동안 유아특수교사 수급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방안 제안함.
- 이상과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한 간극은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둘러싼 현안 해결을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.

## II. 장애유아 보육 현황 및 특수교사 배치 현황

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는 교육기관에 비해 더 많지만,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으로 유아특수교사는 유치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임.

-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유아 현황은 <표 1>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, 장애아 통합어린이집, 일반 어린이집에 각각 6,158명, 4,079명, 1,635명의 유아가 배치되어 총 11,872명의 장애 유아가 배치되어 있음.
  - ▶ 이는 교육부 관할의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총 5,186명 유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임.
  - ▶ 그러나 11,872명의 장애 아동 중에는 0~2세 장애 영아, 입학유예 아동과 방과 후 과정 아동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3~5세 장애 유아 수는 더 적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됨.
  - ▶ 현재 연령별 어린이집 배치 장애 유아 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통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.

<표 1> 어린이집 설립 주체 및 운영 형태에 따른 장애 유아 배치 현황

단위 : 기관 수(명)

구분	국·공립	사회복지법인	법인단체	민간	가정	협동	직장	계
장애아전문 어린이집	42 (1,249)	103 (3,915)	6 (210)	25 (767)	1 (17)	0 (0)	0 (0)	177 (6,158)
장애아통합 어린이집	667 (2,997)	37 (174)	34 (195)	150 (668)	15 (20)	1 (0)	7 (25)	911 (4,079)
일반 어린이집	97	79	48	799	282	7	30	1,342 (1,635)
소계	806	219	88	974	298	8	37	2,430 (11,872)

자료: 보건복지부(2016), 보육통계, p.130, 132.

- 어린이집 이용 장애유아 만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, 유치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유치부 등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-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장애아 보육교사 배치 현황은 <표2>와 같음.
  - ▶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반 담당교사 중 대략 10%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(17.6월 기준, 보건복지부 내부자료).
  - ▶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직무교육 이수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.

〈표 2〉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아 보육교사 현황

단위 : 명

어린이집 유형	장애아 수	특수교사	장애아 보육교사
장애아전문어린이집	6,158	1,279	810
장애아통합어린이집	4,079	827	544
계	10,237	2,106	1,354

주: 〈표2〉의 특수교사 수치는 유아특수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정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가 포함된 수치임.

자료: 보건복지부(2016), 보육통계, p.144, 147.

- 현재 보육통계 상의 특수교사 및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를 통해서는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에서 규정하는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제대로 갖춘 교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.
- 장애 유아 현원 파악을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선결과제임.

### Ⅲ. 유아특수교사/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

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 마련 필요.

-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춘 교사, 즉 교육부에서 발령하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와 보건복지부에서 발령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서로 다른 자격 종을 가진 두 영역의 전문가가 같은 기관에 배치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.
- 유아특수교사 양성 현황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현황
  - ▶ 2017년 10월 현재 교원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총 11개 대학에서 250명 내외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음.
  - ▶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개 전문대학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총 120여명을 양성하고 있음.
- 이상에서 언급되었듯이 유아특수교사 양성 자체가 많이 되지 않고 있으며, 수도권 지역 대학에서는 유아특수교사 양성학과가 부재한 상황으로 천안이남 지역에서만 양성되고 있음.
  - ▶ 반면, 유아특수교사 수요는 수도권에 더 많은 상황이므로 지역에서 양성된 유아특수교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임.
  - ▶ 배출된 유아특수교사들은 특수학교, 특수학급,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지원 및 취업하고 있음.
-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도 2개 전문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특수교사 대체 역할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.
  - ▶ 현장경험이 많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교육(특수교육)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여도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이 어려운 구조임.
- 현재 대학 평가 시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취업을 할 경우 임용율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.

- 2017년 12월 1일자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'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(특수학급 1,250 학급) 신설 및 특수교사 확충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특수교사 배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.
-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수교사 배치를 어렵게 함.

#### IV.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 대책 마련

유아특수교사 수급을 위한 단기 및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, 이와 관련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.

- 단기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함. 첫째,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, 컨설팅, 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 제공이 되어야 함.
  - ▶ 교사 교육 내용, 방법(온라인/집체 등), 횟수, 장소, 강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져야 하고, 어떤 전달체계(예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를 활용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수립 및 전달이 이루어져야함.
  - ▶ 이에 따른 사업 운영비 확보가 필요함.
- 둘째,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단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차별화된 수당 지급 방안 마련 제안
- 셋째,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함.
  - ▶ 고경력 가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교육(특수교육)대학원에 진학하여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모색
  - ▶ 대학평가에서 어린이집에 취업할 시에도 임용률 인정 수용 협의 등
-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 필요
- 특수교사 수급을 포함한 효과적인 장애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 필요
  - ▶ 장애 영아, 장애 유아, 초등학교 입학 유예 장애 아동, 방과 후 과정 장애 아동 등에 관한 현황 및 교사 배치 현황,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정확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.
  - ▶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배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유아특수교사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가능함.

이정림 연구위원 leettu@kicce.re.kr